

# 「구미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

## 일부개정조례안」

# 검 토 보 고 서

### 1. 제 출 자: 구 미 시 장

### 2. 제안이유

-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반려견 놀이터의 설치 및 운영 규정을 마련하여 반려견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 완화와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고자 함

### 3. 주요내용

- 가. 반려견 놀이터 정의에 관한 사항(안 제2조제11호)
- 나. 반려견 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17조)
- 다. 상위법령 불부합 정비(안 제2조, 안 제4조~제7조, 안 제9조~제13조, 안 제16조)

### 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,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
- 나. 합 의 : 감사담당관, 정책기획과, 예산재정과, 공원녹지과와 합의되었음

## 5. 검토의견

### ○ 본 조례안은

- 반려견 놀이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고 「동물보호법」 등 상위법령에 개정에 따라 불부합하는 내용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으로,

### ○ 검토 결과,

-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9조제1항제7호1)에 따른 문화공원에 반려견 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추후 반려견 놀이터 이용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는 등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.
- 관련부서는 동물보호센터와 유기동물입양센터를 포함하는 반려동물 문화공원 조성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, 조성 후 시설물 유지·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.

---

1) 제9조(공원시설의 설치·관리기준) ①법 제19조제7항에 따라 공원시설은 도시공원의 기능을 다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.

(1. ~ 6. 생략)

7. 문화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은 문화자원의 보호·관람·이용·안내를 위한 시설로서 조경시설·휴양시설(경로당 및 노인복지관은 제외한다)·운동시설·교양시설·편익시설 및 동물놀이터(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·시 또는 군의 조례로 설치를 허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)로 할 것